

중복과다보증, 회사채관련보증 등의 조기해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3월 해소시한이 만료 되는 30대 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의 차질없는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2000년 4월 이후 만기 도래 회사채관련 보증 등의 조기해지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채무보증 해지원칙에 합의하고, 지난 11월 30일 금융기관에 동 원칙에 따른 해지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2월 22일까지 동 해지실적을 받아 점검중이다.

채무보증 해지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복·과다·중첩보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지하도록 하였다. 중복보증의 경우 1개 회사의 보증만 남기고 모두 해지하고, 여신의 130%를 넘는 과다보증은 무조건 해지해야 하며, 여신금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함께 제공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을 모두 해지해야 한다. 둘째, 여신잔액이 없는 포괄근보증은 물론, 포괄근보증중 여신금액의 130%를 넘는 보증은 해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0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관련 보

증중 피보증회사의 신용등급이 높거나(B이상), 보증회사가 부도, 청산중인 경우 등 그 부실이 심각하여 보증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수수료 제공 또는 금리인상을 통해 해지하되, 수수료율 등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하에 결정하게 된다. 넷째, 워크아웃 기업 상호간 보증으로서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미해지 상태로 남아있는 채무보증은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 그밖의 보증의 경우에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해지가 가능한 보증은 최대한 해지하도록 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99년 9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약 6조4천억((1~5대 1.3조원, 6~30대 5.1조원)이며 이중 중복과다보증은 약 6,600억원, 포괄근보증은 9,300억원, 회사채관련보증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금번 채무보증 조기해지 추진에 따라 상기 보증들의 상당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SOC민자사업전담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예외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수), SOC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완공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후 정부에 부속되는 SOC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SOC민자사업전담법인의 출자자가 제공하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였다고 밝

혔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SOC사업의 위험이 큰 반면, 이를 회피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출자자 보증없는 대출을 기피해 왔고, 외국에서도 SOC사업에 대한 대출시 출자자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SOC민자사업

법인(현재 8개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금지제도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SOC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7조의5)을 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출자자가 SOC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동 시행령의 개정작업은 2000년초 출자총액제한제도관련 시행령 개정시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의 예외조항(시행령 제17조의5)

- 자본재 등의 생산 또는 기술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관련 보증(수출제작금융)
- 해외건설 및 용역수출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보증
- 국내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기술개발자금관련 보증
- 인수인도조건수출(D/A) 및 지급인도조건수출(D/P) 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해외직접투자, 해외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12월, 5개 이동전화사업자(SK텔레콤(주), (주)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주), (주)LG텔레콤, 한솔PCS(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보다는 회사의 편의만을 위해 규정한 24개 유형의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하고 이들 조항들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명령 하였다.

공정위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이동전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5개사는 시장기반을 확대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청소년)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등 치

열한 고객유치 경쟁을 하면서 그 가입과 유치, 해지과정에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신규업종이면서 급속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Emerging Market인 이동전화 시장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입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마련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서울 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소비자단체로부터 불공정조항의 심사청구가 있어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용중인 이용약관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

(단위 : 건)

| 연 도 |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 |
|-----------------|--------|-------|
| 1999(1.1~11.30) | 12,879 | 1,556 |
| 1998 | 5,695 | 302 |
| 1997 | 928 | 56 |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9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금번 조사에서 현행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문제점이 그 구성 및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여 고객이 이해하고 어렵게 작성되어 있으며, 고객과 사업자의 계약관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정부의 관계까지 규정하고, 사업자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한 내부관리규정 및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각사별 불공정약관조항(SK텔레콤(주) 21개조항, (주)신세기통신 18개조항, 한국통신프리텔(주) 11개조항, (주)LG텔레콤 14개조항, 한솔PCS(주) 14개조항)에 대하여 무효토록 시정명령하고, 이외에 현재 사용중인 이용약관상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거나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SK텔레콤(주) 14개조항, (주)신세기통신 12개조항, 한국통신프리텔(주) 11개조항, (주)LG텔레콤 14개조항, 한솔PCS(주) 11개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그 표현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공정위의 금번 시정조치로 현재 2,200만여명이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가입과 유지, 해지과정 등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함과 아울러 소비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이동전화 시장도 능률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금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시정하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검토, 고객이 계약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이용약관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5개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여 '99년 12월 6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이용약관에도 대부분의 불공정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대표적 유형 및 무효취지 ◆

| 구 분 | 약 관 조 항 | 무 효 취 지 |
|------------|--|--|
| 서비스번호 변경조항 | - 서비스번호의 변경시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함 | · 이동전화 번호는 고객의 재산으로 서비스번호의 불가피한 변경시에는 그에 대한 충분(상당)한 기간내에 사전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7일의 고지기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공정위 업무활동

| 구 분 | 약 관 조 항 | 무 효 취 지 |
|-----------------|--|---|
|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조항 |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비, 이미 납부한 요금 등의 환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함 |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그가 사술을 쓴 경우나 혼인한 자인 때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회사는 부당이익의 반환 법리에 따라 이미 가입비 등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환불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 보증금 등 반환조항 | -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있어 정산되지 않은 요금, 수수료, 전과사용료 등을 수납하기 위하여 <u>최근 3개월 요금을 평균한 1개월분 이상의 금액</u> 을 지급 보류토록 하고 또 상환시 <u>고객과 협의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u> 으로 하도록 함 | · 보증금 반환시 최초 3개월 요금을 평균한 <u>1개월분 이상의 금액</u> 을 보류하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로서 분쟁만 유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보증금은 정산후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별도 협의나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상환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 과오납 요금 반환조항 | -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토록 함 | · 고객이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u>과·오납 요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없이 반환하는 것은 고객과의 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u> |
| 기타 불공정 조항 | <p>◎ 비밀번호 유출시 책임조항</p> <p>- 비밀번호 유출 등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에게 책임지도록 함</p> <p>◎ 통신판매시 개통일 조항</p> <p>- 통신(사이버) 판매의 경우 단말기 발송일을 서비스 개통일로 하도록 함</p> <p>◎ 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조항</p> <p>-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거 또는 복구하나 <u>부득이한 경우에는</u> 서비스를 일시중단하거나 중지토록 함</p> <p>◎ 구입보조금 반환면제 제약조항</p> <p>- 구입보조금 반환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은 고객은 동일 사유로 다시 구입보조금 반환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도록 함</p> <p>◎ 요금 등 수시청구조항</p> <p>- 고객의 신용도나 명시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사용요금 한도관리를 하며 정해진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수</p> | <p>· 회사나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문제를 자기는 부담하지 않고 고객에게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u>이용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임</u></p> <p>· 단말기 발송일을 서비스 개통일로 하는 것은 <u>도달주의 원칙에 어긋나며</u> 발송도중 부정사용의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임</p> <p>· 부득이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u>구체적인 사항을 구분·명시하지 않는 것은</u> 수거·복구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임</p> <p>· 통화품질 불량으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통신설비·단말기 개선으로 <u>통화품질이 양호해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u>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p> <p>· 고객이 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용정지나 보증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계약해지하면 될 것임에도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요금 한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수시로 사용요금 한도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는</p> |

| 구분 | 약관조항 | 무효취지 |
|-----------|---|--|
| 기타 불공정 조항 | 시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것은 납입기일에 대한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 | ◎ 손해배상범위 제한조항 -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u>8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에는</u> 해당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토록 함 | · 휴대폰 불통은 8시간 이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통화불통시 고객이 사실상 요금의 면제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약관조항은 통화불통 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기술적·시간적인 근거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사업자 위주의 규정으로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부담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임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개선 필요 조항 ◆

| 약관조항 | 개선 필요 취지 |
|---|---|
| - <u>고객은 서비스 이용시 이용가능지역을 확인하여야 함(이용지역)</u> | · 전문지식이 없는 고객으로 하여금 이용가능지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점이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할 우려가 있음 |
| - 회사는 '99년 4월 1일부터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음 (<u>의무사용기간 설정금지</u>) | · 의무사용기간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맺어진 계약으로 즉, 소비자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동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약속을 믿고 사용요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수록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u>의무사용기간 설정을 금지하는 것은 약관의 내용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닌 무익한 조항임</u> |
| - 회사는 업무 취급 등 고객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되 수사상 필요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u>회사의 의무</u>) | · 고객 정보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을 한정하고 기관의 장이 요구하도록 하는 등 <u>절차를 엄격히 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u> |
| - 고객은 이의제기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u>이용정지 및 해제절차</u>) | · 증빙자료를 이의신청과 함께 내어야만 이의신청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현은 잘못됨 |
| -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u>고객의 의무</u>) | · 이용정지(해제) 사유와 관련 해석상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임 |
| -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정한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함(<u>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u>) | · 주소 변경, 번호 변경, 단말기 변경 이외의 변경을 회사가 정하는 특정 영업점으로 한정하면서 본사, 지사 이외에 회사가 정한 영업점이 어떤 명칭, 지역, 특징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99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과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99년 1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20개사가 계열제외되어 '99년 12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99년 11월 1일 607개사에서 589개사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9개사가 순감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9개사가 순감하였다.

◇ '99년 11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 구 분 | '99. 11. 1 | 편 입 | | | | 제 외 | | | | | 증 감 | '99. 12. 1 |
|-------|------------|----------|----------|----|---|-----|----------|----------|----|----|-----|------------|
| | | 회사 설립 | 주식 취득 | 기타 | 계 | 합병 | 지분 매각 | 친족 분리 | 기타 | 계 | | |
| 전 체 | 607 | 1 | - | 1 | 2 | 9 | 9 | - | 2 | 20 | △18 | 589 |
| 1~5대 | 186 | - | - | - | - | 2 | 6 | - | 1 | 9 | △ 9 | 177 |
| 6~30대 | 421 | 1 | - | 1 | 2 | 7 | 3 | - | 1 | 11 | △ 9 | 412 |

◇ '99년 11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2개사(회사설립 1, 임원교류 1)
- ◎ 제외 : 20개사(합병 9, 지분매각 8, 기타 3)

| 구분 | 편 입 | | | 제 외 | | | 증감 |
|-----|-------|-------|-----|-------------------|---------------|--------|----|
| | 회 사 명 | 업 종 명 | 사 유 | 회 사 명 | 업 종 명 | 사 유 | |
| 현 대 | - | - | - | 인천공항공항사 터미널(주) | 항공운수 유지서비스 | 경영권 양도 | △6 |
| | | | | 기아중공업(주) | 자동차부품제조 | 지분매각 | |
| | | | | 기아전자(주) | 자동차부품제조 | 지분매각 | |
| | | | | (주)기아정기 | 자동차부품제조 | 지분매각 | |

공정위 업무활동

| 구분 | 편 입 | | | 제 외 | | | 증 감 |
|----------|-----------|-------|------|------------------|-----------------|-------------------|-----|
| | 회사명 | 업종명 | 사유 | 회사명 | 업종명 | 사유 | |
| 현대 | - | - | - | 기아모텍(주) | 자동차부품제조 | 지분매각 | △6 |
| | | | | (주)한국 에이비시스템 | 자동차부품제조 | 지분매각 | |
| 대우 | - | - | - | 대우창업투자(주) | 창업투자업 | 지분매각 | △1 |
| 삼성 | - | - | - | 아산전자(주) | 전자부품제조업 | (주)노비타에 합병 | △1 |
| 엘지 | - | - | - | 엘지종합금융(주) | 기타금융업 | LG투자증권(주) 에 합병 | △1 |
| 한진 | - | - | - | (주)협신 | 수상운수업 | (주)한진에 합병 | △1 |
| 금호 | - | - | - | 금호피앤비화학(주) | 화학제품제조 | 금호개발(주)에 합병 | △1 |
| | | | | 금호이큐에스 컨설팅(주) | 품질경영시스템 개발 | 금호개발(주)에 합병 | |
| | | | | 케이디통신(주) | 통신기기수출입 | 금호개발(주)에 합병 | |
| | | | | 한국복합화물 터미널(주) | 화물터미널 건설·운영 | 금호개발(주)에 합병 | |
| | | | | (주)동아렌트카 | 렌트카 | 지분매각 | |
| | | | | - | - | - | 1 |
| 대림 | 웹텍창업투자(주) | 창업투자업 | 회사설립 | 동양글로벌(주) | 무역업 | 동양시멘트(주)에 합병 | 0 |
| 동양 | 동궁산업(주) | 레미콘제조 | 임원교류 | 해태가루비(주) | 식품료품제조업 | 해태제과(주)에 합병 | △1 |
| 해태 | - | - | - | 강원정보기술(주)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지분매각 | △2 |
| 강원 산업 | - | - | - | 한국슈레다 산업(주) |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채무보증관계 해소 등 | |
| 신호 | - | - | - | 한국 케이디케이(주) | 특수전선제조업 | 지분매각 | △1 |
| 계 | 2 | | | 20 | | | △18 |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

서기관 승진

윤 헌(尹 憲, 조사국 조사기획과)